【경북지방우정청 공고 2016 - 127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구미인동우체국 3층 사용허가 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단위 : 원)

재산의 위치	사용면적(㎡)	용도	예정가격(원,연간) (부가세 포함)	입찰집행(개찰)		비고
				장소	일시	
경북 구미시 인동중앙로 11 (인의동 372-1 외 1필지) 구미인동우체국 3층	건물 255.07 (전용 216.91)	근린생활시설	40,128,000	경북지방우정청 집행관 PC	2016.11.8. 10:00	

※ 희망업종의 인·허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확인은 입찰참여 전 입찰참여자가 하여야 하며, 낙찰 후 사업자등록 관련 인·허가를 못 받은데 대하여 경북지방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아울러 2층을 우체국으로 사용함에 있어 입주가능업종 중 주류 판매 및 가스사용 업종은 허가를 지양하며 허가면적에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상기 예정가격 외 관리비 등은 입찰 대상이 아니며, 낙찰가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의 제한 : "3. 입찰참가자격", "4. 국유재산사용계획서의 제출" 관련

- 국유재산사용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시어 사전승낙 후 입찰 참가
- 미풍양속 및 우체국사업수행 저해여부, 국세체납여부, 사업의 지속성여부 등을 판단하여 사전승낙여부 결정
-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해당관청의 사업인·허가 및 해당관청이 요구하는 시설 설치·보완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마. 허가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허가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바. 입찰일정

o 1차

입찰서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제출일시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개찰장소
2016.10.14. 09:00 ~ 2016.11. 7. 16:00	2016.10.14. 09:00 ~ 2016.11.7. 12:00	2016.11. 8. 10: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경북지방우정청 집행관 PC

o 2차

입찰서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제출일시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개찰장소
2016.11.9. 09:00 ~ 2016.12.1. 16:00	2016.11.9. 09:00 ~ 2016.12.1. 12:00	2016.12. 2. 10: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경북지방우정청 집행관 PC

※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제2호에 따라 1차 입찰 시 유효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공고 없이 2차 입찰을 진행

2. 입찰 방법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이하 관련법령 검색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참조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나.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한 관리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입찰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체납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됨)

바. 동 국유재산을 사용할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목적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은 후 입찰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사전 승낙 없이 입찰한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4. 국유재산 사용계획서의 제출

가. 제 출 처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팩스 접수 (단, 제출마감시간 내 도착분만 인정)

1) 연락처 : ☎ 053-940-1436, 1420 FAX 0505-005-1951

2) 주 소 : 대구 동구 동촌로 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국유재산담당

다. 국유재산 사용계획서의 내용 : 「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1)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마. 입찰참가 승낙 통보일 : 서류 제출 후 1일 이내 서면 또는 유선 통보

5. 입찰서 제출

가. 자격 : 본 입찰참가 관련 경북지방우정청의 서면(유선)승낙을 받은 자

나.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10(10%)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계정” 또는 “하나위탁계정” 및 “우리위탁계정” 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①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②입찰보증금액 미만으로 입금한 경우, ③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제반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사용허가)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입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 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나.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다.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입찰집행(개찰)일 이후 발행 본)

마.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우정청에서 배부)

바. 각서 1부.(우정청에서 배부)

※ 각서는 사용허가사항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 만료 및 취소 시 원상복구 이행, 사용재산의 전대 및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 대리인 제출의 경우

1) 위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1부.(사용인감 날인 불가)

2)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날인 불가)

3) 대리인 주민등록증(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 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 입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우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입찰한 경우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공매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사용허가)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동법시행령 제 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사용허가는 경북지방우정청 명의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게 되며 낙찰자는 사전에 사용허가 20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경북지방우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지정기일 내에 경북지방우정청에서 고지한 연간사용료(분할납부시 1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납부시 국유재산법 제 32조(사용료) 2항의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 51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여 경북지방우정청과 사전협의가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보증금 반환은 연간사용료(분할납부시 1회 사용료) 납부가 확인되고, 사용료 분할납부시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②항의 관련 조치가 완료된 후 사용인의 요청에 의거 사용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단, 계약 보증금 반환 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는 실제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연간사용료(분할납부시 1회 사용료)를 완납하고 이행보증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경북지방우정청에서 완납 및 완료 사실을 확인 후 낙찰자는 대상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바. 사용료 및 관리비(별도 납부하는 실비성 경비를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상의 사용개시일 부터 기산하여 부과합니다.

아. 월 관리비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상의 사용개시일과 낙찰자의 내부공사(시설물 설치 등) 시작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여 부과합니다.

자. 월 관리비 등은 관할 총괄우체국에서 고지하는 계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12. 연간사용료 결정방법 및 납부 등

가. 경쟁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 3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0조 1항에 의거 매년 선납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및 월 관리비는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조정합니다.

다. 분할납부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라. 연간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이며,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경북지방우정청에 예치하거나 경북지방우정청장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사용료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입니다.

마. 2차년도 이후(갱신기간 제외) 기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당해연도 재산가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사용요율 × (입찰로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바. 건물화재보험은 경북지방우정청 산정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월 관리비는 실비성 경비로 하며, 실비성 경비는 낙찰자가 별도로 설치한 전광판·전산시설·냉난방기 등의 특수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제세공과금, 제비용 및 정규 운영시간 외 냉난방비 등과 추가 발생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가스비 등으로 실비 정산하여 지정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예정가격(사용료)이 산출오류 등으로 부족 징수되었을 때에는 추가고지 가능합니다.

13.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등

가. 허가권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습니다.

1)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국유재산법 제 3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사용허가에 따른 의무사항(사용료 납부, 보험가입, 관리비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당해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때
5) 당해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때
6)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때
7) 허위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때
8)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의 용도로 사용할 때

나. 허가권자는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조건 이외에 경북지방우정청에서 정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추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인의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로 사용인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경북지방우정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설치 가능한 시설물 범위 및 각서 제출 등

가. 국유재산법 제 1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나. 기존 설치된 설치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경북지방우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시 사용인의 비용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 2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 5항에 정한 가설건축물로서 그 존치기간은 사용허가기간 이내로 합니다.
2) 기타 가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a.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b.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c. 주거용 시설물
d.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제공되는 시설물

e. 설치 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라. 현 상태 이외의 가설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청사관리부서의 사전승인 후, 사용인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경북지방우정청에 예치하거나 경북지방우정청장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매년 갱신금액 적용)

바. 시설물 설치 시 사용인은 해당 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비)의 20% 이상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경북지방우정청에 예치하거나, 경북지방우정청장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용허가기간과 일치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경북지방우정청에서 가설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시 시설물에 대한 사용인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증각서를 계약체결 또는 시설물 설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입찰참가신청자는 반드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재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경북지방우정청에서 정한 사용허가조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경북지방우정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 관련 제반 권리를 양도·양수·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의 사용허가 재산 점유,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낙찰자의 단독 책임으로 하며, 낙찰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우정청 및 제3자에게 권리금, 영업비, 유익비, 필요비 등을 청구·주장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대상재산 내에서의 영업·사용 행위를 위한 설비공사와 내부인테리어공사 등 일체의 공사는 우정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낙찰자의 책임 및 비용부담 하에 시행합니다. 단, 낙찰자는 내부인테리어공사 시 건물 내·외부의 미관과 인근 마감재의 종류 및 색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우정청은 낙찰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낙찰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 대상재산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태로 사용허가 되고 낙찰자는 입찰 대상재산 내에 개별 냉난방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입찰 대상재산까지의 전기공사, 기계설비(급·배수) 인입 공사, 구분 칸막이 설치에 따른 소방공사는 우정청에서 시행하므로 세부 공사내용을 사전 확인하기 바라며, 가스공사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 조건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온비드"를 통하여 사전 공지하며, 본 입찰관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서류 제출 시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 체결 시 사용허가서와 별도로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칙 또는 특약사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 대상재산 내에서의 기본운영시간은 연중무휴 06:00~24:00로 하되 운영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정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차.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현장에 대한 문의는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3-940-1436, 1420) 또는 관할 총괄우체국 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16. 기타

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1) 주 소 : 대구 동구 동촌로1(입석동982-3)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2) 연락처 : ☎ 053-940-1436, 1420 FAX 0505-005-1951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1588-5321)

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1)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온비드 홈페이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2) 입찰서 제출 여부 : 온비드 홈페이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3) 입찰결과 : 온비드 홈페이지 ▹ 나의 온비드 ▹ 이용기관 입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경 북 지 방 우 정 청 장